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 주요 FAQ

1. 회원가입 및 로그인

Q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 하려면 가입을 해야 하나요?

A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를 하기 위해선 원료목록보고 전용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.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→ “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” 전용 사이트 → 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” 전용 원료목록보고를 클릭하신 후 이용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* 맞춤형화장품판매업만 하시는 경우 업 구분에 ‘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’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: 책임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겸업하는 회사입니다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용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?

A : 책임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겸업이신 경우,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로그인 이후 정보 수정을 통해 ‘맞춤형화장품판매업’ 정보를 입력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 : 협회 회원사 아이디와 원료목록보고 아이디는 다르나요?

A : 회원사 로그인은 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회사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원료목록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→ “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” 전용 사이트 → 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” 전용 원료목록보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.

Q :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 사이트에서 “로그인” 버튼을 클릭한 후 “아이디/비밀번호 찾기”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원료목록보고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보고 담당자의 정보가 변경되어 아이디/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에서 “ID, PW 찾기가 모두 안되는 경우"를 클릭하시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,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과 보고 담당자 정보 (성명/핸드폰/이메일)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송부주시면 협회에서 확인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2. 원료목록보고 시점 / 대상

Q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는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?

A : 「화장품법」제5조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「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* 2022년에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원료목록은 2023년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.

Q :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생산실적도 보고하여야 하나요?

A : 맞춤형화장품은 원료목록만 보고 대상이며, 생산실적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 : 책임판매업자가 '맞춤형화장품내용물'에 대한 원료목록을 보고하고 있는데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원료목록을 보고 해야 하나요?

A : 책임판매업자는 '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내용물'에 대해서만 원료목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내용물을 혼합 또는 소분하여 만든 '최종 맞춤형화장품'에 대해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보고하셔야 합니다.

Q : '맞춤형화장품'을 조제하는 경우에만 보고 대상인가요? 단순 소분이나 리필의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: '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'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들이 보고 대상입니다.

① **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**에 **다른 화장품의 내용물**이나 색소,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**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**

② **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(小分)한 화장품** (단, 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)

Q :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이 없는데 보고해야하나요?

A :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이 없는 경우 '판매내역 없음'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.

3. 원료목록 보고 항목

Q : 원료목록보고 항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A : 공지사항 - '2022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안내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신고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A :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제OOO호에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Q : 원료성분명은 반드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해야 하나요?

A :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시 원료성분명은 반드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.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"표준명 미등록 원료입니다."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. 성분사전 사이트에서 표준화된 명칭을 확인하시어 수정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 : 표준화된 명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A : 표준화된 원료명칭은 협회 성분사전(https://www.kcia.or.kr/cid/)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※ 협회 성분사전(https://www.kcia.or.kr/cid/) 접속 → 메인 화면 하단의 "표준화 명칭 목록 다운로드" 클릭 또는 "화장품 성분명 검색" 클릭 → 성분명 검색

Q : 맞춤형화장품의 유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
A : 맞춤형화장품 유형은 매뉴얼의 '[참고] 유형별 분류에 따른 유형 표시'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Q : 제품명은 어떤 기준인가요?

A : 제품명은 판매내역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
Q :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?

A : 공급받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책임판매업자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

Q : 화장품 제조업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?

A : 공급받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제조업자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업자 상호명을 기재하면 됩니다.

4. 원료 검사결과 문구

Q :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“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.”라고 뜹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: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“【별표1】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”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(배합금지) 중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부 금지가 되는 원료가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“디알칸올아마이드류”의 경우 “2급 아민함량이 5%를 초과하는 경우”에 한해 배합금지입니다. 이렇게 단서조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부 금지가 되는 원료의 경우 원료목록 보고시 “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.”라는 멘트를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

※ 해당 성분에 대해서 원료목록보고 시 별도의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회사 자체적으로 확인해보시라고 안내드리는 문구입니다.

Q :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“순수 배합금지 원료입니다.”라고 뜹니다. 어떻게 해야하나요?

A :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“【별표1】 사용할 수 없는 원료”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입니다. 단서조항이 없는 “순수” 배합금지 원료이므로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